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85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제5조제1항 관련) 2. 심사불능, 3. 심사조정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신설 및 삭제한다.

부 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신설 (총 12항목)

## 2. 심사불능

코드	세부 코드	내역
SU	02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중증외상 영역 관련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
SW	02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포괄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관리료 산정 착오 또는 기재착오

## 3. 심사조정

코드	내역
B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산정특례 및 시범사업 특정기호 미존재로 조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 2021.9.9.)
B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정보시스템에 제출한 서식 내역 불일치로 조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 2021.9.9.)
B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필수인력(전문의1명, 간호사1명) 신고 불일치로 조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 2021.9.9.)
B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교육상담료 I 와 교육상담료 II 동시 산정불가로 조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 2021.9.9.)
B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교육상담료 II 산정횟수 초과로 조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 2021.9.9.)
B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교육상담료 I, 환자관리료 외래명세서 외에 산정으로 조정(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 2021.9.9.)
B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진료내역의 의사가 재택의료팀 전문의가 아니므로 조정(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 2021.9.9.)
B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교육상담료 I 산정횟수 초과로 조정(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 2021.9.9.)
B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환자관리료 산정횟수 초과로 조정(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 2021.9.9.)
B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시범사업 수가 외 산정으로 조정(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 2021.9.9.)